

반려동물 사료 검역방법(제34조 관련)

1. 적용품목

- 가. 「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」의 제3조에 해당되는 동물용 사료
- 나. 가목 이외의 지정검역물이 함유된 수입 반려동물(「동물보호법」에 따른 반려동물에 한함)용 및 조류용 사료

2. 검역방법 및 기준

가. 제출서류 및 서류검사

- 1) 제1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품목
 - 「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」(이하 "위생조건")에 따라 양국간 협의된 검역증명서
- 2) 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품목
 - 검역증명서(BSE 관련국산 BSE관련품목이 함유된 경우에는 반추동물 유래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추가로 증명) 단, 유가공품만 들어 있는 반려동물사료는 열처리 증명서(72℃에서 15초 이상)로 같음
 - 수입사료 검정기관의 사료수입신고필증(BSE 관련국산 BSE관련품목에 한하며, BSE 불검출 여부가 기재)
 - 수입금지지역산일 경우 멸균처리 등 확인

나. 현물검사

- 1) 제1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품목
 - 위생조건에 따른 표시사항 및 검역증명서의 기재내용과 실제 검역물의 일치여부를 확인
 - 검사대상 검역물에 관하여 포장상태, 종류, 성상 및 기타 이상 여부 확인
- 2) 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품목
 - BSE 관련국산 BSE 관련품목이 함유된 반려동물사료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생산국 및 원재료, 외부 오염 위험이 없도록 포장되었음을 확인
 - 검역관은 「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」 제34조,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실시
 - 특송화물(휴대·우편물 포함)로 수입되는 유가공품만 함유된 애완동물사료는 현물검사 결과 열처리 공정(72℃에서 15초 이상)을 거친 것

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역 제외

3) 현물검사 수량

- 현물검사 수량은 무작위로 검역신청 건/품목별 포장수량 단위 1% 이상 실시,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대검사 실시(단, 방역적으로 안전하게 멸균된 품목 및 확인품목에 대해서는 샘플 및 가공공정서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)

3. 기타사항(제1호의 나목에 한함)

- 가. 수입사료 검정기관: 한국사료협회, 한국단미사료협회, 농협중앙분석센터
- 나. 사료수입신고필증(현물검정(BSE 불검출)에 한함)은 최초 수입 시 및 동일한 제품(동일국가·동일제조회사·동일제품)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

4. 불합격 처분

- 가. 수출국 검역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해당 검역 신청 건 불합격
- 나. 서류검사 및 현물검사 결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검역 신청 건 불합격
- 다. 현물검사 시 표시사항, 성상 등이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만 불합격 처분 가능